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이행 지체 행위의
불공정 조달행위 지정〉

■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156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이행 지체 행위의 불공정 조달행위 지정 (안 제21조)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일영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2. 27.

다. 회 부 일 : 2026. 3.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조달 과정에서 계약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여 조달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재정의 건전성이 저해되고 있음.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은 불공정 조달행위의 부당계약체결, 담합 등 제6호까지 규정하나,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장기적 계약 이행 지체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어 공급 지연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저하와 예산 낭비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제21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을 초과한 계약 지체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지정함으로써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달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개정안을 통해 조달 당사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제7호 등).

III. 검토의견

1.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이행 지체 행위의 불공정 조달행위 지정 (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 불공정 조달행위의 범위 확대 <u><신설></u>	○ 불공정 조달행위의 범위 확대 -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는 행위

현행법은 입찰 등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직접생산 의무 위반,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등을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하여 조사하고,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된 계약상대자등¹⁾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조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²⁾

1)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①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 조달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하고 그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21조의2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사업장·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된 계약상대자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런데 최근 조달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 장기적으로 계약 이행을 지체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적기 공급 지연으로 인한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 및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는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등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이행 지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적기 납품을 유도함으로써 공공조달의 신속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조달기업의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장기적 계약 이행 지체 행위를 조사·제재하여 재정집행의 신속성·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상 제재 체계 등과의 중복 우려가 있음. 현행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처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불공정 조달행위로 이득을 얻은 때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⑦ 수요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달청장이 조사를 위해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은 계약 이행 지체에 대해 그 심각성에 비례하는 제재 수단을 이미 구비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납품 지체 시 지연일수에 비례하여 금전적 패널티인 지체상금을 부과³⁾하고 있고, 장기 지체로 인하여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등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⁴⁾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⁵⁾하고 있음.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의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
-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6)에 따라 계약질서위반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여 2년 이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계약법과 유사한 수준의 강력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이미 국가계약법 등을 통해 금전적 배상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까지 완결된 제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므로, 이를 현행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부당이득 환수 규정 적용에 구조적 모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현행법 제21조제6항7)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이득을 얻은 경우 이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회계원칙 등)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하 “계약질서위반행위”라 한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정당업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질서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질서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⑥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불공정 조달행위로 이득을 얻은 때에는 이를 환수

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취득한 불법적 이익은 환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지체한 업체는 지연일수에 비례하는 지체상금 등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게 되므로 조달청이나 수요기관을 상대로 편취하는 부당이득 자체가 구조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조적 모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셋째, 제재 요건인 ‘횡수 및 기간’ 산정 기준의 명확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음. 안 제21조제1항제7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횡수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지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단일 계약 내에서 분할 납품하는 과정에서의 지체를 별개의 지체로 보아 합산할 것인지, 하나의 업체가 동일 수요기관과 체결한 독립된 다수의 다른 계약에서 발생한 지체를 포괄하여 합산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에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재정경제부도 기업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체 횡수, 기간 등의 구체적인 요건을 하위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①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 조달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하고, 그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사업장·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① - ----- ----- ----- ----- ----- ----- ----- ----- -----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설>		7. <u>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를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행위</u>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불공정 조달행위로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⑥ ----- ----- <u>제7호</u> ----- ----- ----- ----- ----- ----- -----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152